

2026년도 바이오소재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사업 (고부가 바이오화학소재 기술고도화 지원사업) 수혜기업 모집 공고

울산지역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바이오화학소재 지역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바이오화학소재 전주기 분석지원 및 기술지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관련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

2026년 5월 13일
한국화학연구원장

1. 지원개요

○ **(사업명)** 2026년 바이오소재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사업 (고부가 바이오화학소재 기술고도화 지원사업) 전주기 분석지원 및 기술지도

○ (지원내용)

세부 내용	주요 내용	목표 (기업수)
<p>① 바이오화학소재 시험분석평가 전주기 분석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바이오화학소재 특성 (물성, 성분, 구조, 분해 평가, 바이오매스 함량 분석) 분석 지원 ○ 분해 산물 분석, 독성 평가를 통한 제품 안전성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○ 고도화 분석 장비 및 시험평가 인프라 활용 제품 신뢰성 확보 및 성능 검증 지원 ○ 전주기 고도 분석지원을 통한 애로기술 컨설팅 	2개사*
<p>② 지역 산업혁신 전문 인력양성 지원 및 정보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바이오화학소재 시험·분석·평가 장비 교육 제공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○ 분석기술 개발 및 DB 제공을 통한 기술지도 ○ 탄소중립, 탄소저감 및 친환경 소재 전환을 위한 분석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지원 ○ 친환경 바이오화학소재 및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증 절차 지원 	2개사*

2. 지원대상

- **(지원자격)** 울산지역 내에 소재한 관련기업으로 바이오화학소재산업 전·후방 연관 제품(기술) 분야로 신청 가능
 - * 검토기준 : 울산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, 공장 등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 - * 한국산업분류코드(KSIC) : C17, C19, C20, C21, C22
(이외의 경우 전후방연관기업임을 입증하는 매출처 계산서,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)

- **(신청자격 요건)**
 - 울산지역 소재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바이오화학소재 관련 중소, 중견, 대기업
 - ※ (우선지원) ^{1순위}창업(7년 이내) 또는 이전사업자*, ^{2순위}중소기업
 - * 이전사업자 : '26년 1월 1일부터 지원사업 선정시까지 울산지역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자

- **(신청제외 대상)**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
 - 국가 및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 및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(기업)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
 -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R&D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 재무상태 불건전으로 인한 결격 판단 기준

- ① 기업의 부도
-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⑤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 ※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
-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정적

3. 평가방법 및 기준

○ (기본방향)

- 울산 지역의 친환경 바이오화학산업단지로의 도약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울산 바이오화학소재 관련 기업들에게 선진제품, 경쟁사 제품, 자사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분석지원(물리적·화학적 분석,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및 기술 상담), 전문인력 양성, 기술지도 및 인증 지원 제공을 통해 바이오화학소재산업 기업지원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행함

- **(평가방법)** 예비진단(필수)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제출서류 사전검토 → 면담/현장실태조사(선택) → 선정평가(필수)

- **(평가항목)** 필요성, 적정성, 타당성, 기대효과, 기타, 우대배점

○ 기본 검토사항

- 공고시 신청기관 자격 여부
 - 수혜기업은 울산광역시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 중소·중견기업만 가능
 - 사업계획서의 개발목표, 개발내용 등이 지원 분야와의 부합여부

- 다음의 경우 지원을 제외함
 - 국가 및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 및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(기업)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
 -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경우
 - * 재무상태 불건전으로 인한 결격 판단 기준은 2. 지원대상 (신청제외대상) 표 참조

○ 주요 검토 및 실태조사

- 회사의 경영상황을 재무제표 위주로 (신용평가 전문업체의 기업 및 신용 정보 조회 결과를 반영가능)검토하고, 검토항목의 부적합 대상자 통보
- 아래 검토내용에 대해 총괄책임자가 불인정시는 사전검토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 제외 처리
 - 의무사항 불이행, 참여제한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
 - 공고상 결격사유 등

○ (선정평가)

-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평가 수행
 - 평가위원은 5인 내외로 구성함
- 과제별 평가는 서면 심의로 수행함
-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(평가위원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)한 후 우대 및 감점을 반영
-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함

평가 항목	세 부 항 목	평 가 지 표
1. 지원 필요성 (30)	○ 필요성	- 기술지원 필요성 (현재 상황 및 지원 필요성)
	○ 기대효과	- 기술지원 전·후 기대효과 (기술, 매출, 고용 부분)
2. 사업성 (40)	○ 시장전망	- 시장규모, 수익성 (투자대비효과), 시장 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
	○ 사업화 추진 전략의 적정성	-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정도
	○ 파급효과	- 기술적 파급 효과 정도
3. 기업 능력 (30)	○ 수혜기업	- 신청과제 현재 업종과의 연계성 (바이오화학 소재 관련 기업) - 신청과제 관련 인프라 보유 정도
	○ 경영현황	- 기업 재무상태 및 현재 경영 능력

※ 우대배점(5점, 창업 7년 이내, 울산지역 중소기업)

○ (지원과제 확정)

- 화학연은 평가결과가 확정된 경우 관련기관에 선정결과를 통보 하고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

○ (협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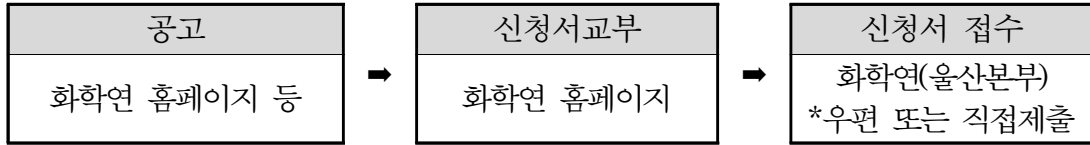
- 협약은 관련한 필요서류 준비와 심의결과가 반영된 수정 사업계획서의 확인 후 화학연에서 협약을 체결함

5. 추진일정 및 신청서 접수

- 공고기간 : 2026년 5월 13일(수) ~ 2026년 5월 29일(금) 18:00

○ 신청서 접수

-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(www.kRICT.re.kr)
- 신청서 접수방법



○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(<http://www.kRICT.re.kr>)에서 사업신청서 등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

- 신청서 및 첨부 증빙 서류는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산업기술지원센터(울산본부) 아래 주소로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(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)
- 주소 : (44429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6-30 (성안동)
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1층 안내데스크
(화학산업기술지원센터)

○ 사업추진 절차

절 차	주 체	주요역할 및 추진내용
↓ 수혜기업 공고	한국화학연구원	- 모집 공고('26년 05월 13일 ~ 05월 29일)
↓ 기업 신청	지원기업	- 기업 지원신청서 접수 ('26년 05월 13일 ~ 05월 29일)
↓ 참여제한 요건 검토	한국화학연구원	- 수혜기업 참여제한 요건 검토 ('26년 06월 01일 ~ 06월 05일)
↓ ① 기업예비진단	한국화학연구원	- 산업코드 적정성,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- 기술경영능력, 연구개발능력, 수익성, 제품 유용성 등 기업역량 확인 ('26년 06월 01일 ~ 06월 05일)
↓ ② 선정평가 (필요시 발표평가)	한국화학연구원	- 지역내·외 산업분야 전문가 5인 이상 - ①, ② 결과 종합하여 최종선정 ('26년 06월 08일 ~ 06월 16일)
↓ 선정결과 통보	한국화학연구원	- 결과통보 (E-mail/유선 통보, 주말 및 공휴일 제외) ('26년 06월 17일 ~ 06월 19일)

○ 사업 추진 주체

구 분	진행 사항	추진 주체
공 고	신규과제 공고	한국화학연구원
사업계획서 접수	우편/직접 접수	한국화학연구원
	서류검토	
신규과제 선정평가	기본계획 수립	한국화학연구원
	실태조사	
	신규과제 평가	평가위원회
	선정과제 확정 및 통보(협약안내)	한국화학연구원
최종평가	협약	한국화학연구원 ↔ 수행기관
	최종 분석지원보고서 작성 및 송부 수혜기업 만족도 조사	한국화학연구원

6. 제출서류

번호	제출서류	부수	비고
1	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	원본 1, 사본 7부	필수
2	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원본 1부	필수
3	사업자등록증명원	사본 1부	필수
4	법인등기부등본	원본 1부	해당 시
5	최근 2개년(2024년 ~ 2025년)도 재무제표 (또는 감사보고서) (창업2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) (2025년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대체)	사본 1부	필수
6	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*	원본 1부	해당 시
7	국세, 지방세 납세(완납)증명서	사본 1부	필수

*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

· 확인서 발급처 안내

- 중소기업인 경우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

- 중견기업인 경우 : 중견기업정보마당(www.mme.or.kr)

※ 최초 등록시 증빙자료 제출·검토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

8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
9.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

- 협약기간 내 본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(단, 협약기간 내 무협의를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 사업비 사용가능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담금을 부과
 1. 평가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
 2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
 3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
1.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·변조·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
2.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
3.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
4.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
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
6. 그 밖에 국구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4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
10. 이의신청

○ 이의신청의 범위

- (이의신청 가능 사항)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, 과제에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,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

*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

- (이의신청 불가 사항) 선정결과 통보, 평가위원 선정, 사업비 결정, 평가규정 및 절차, 평가방식(서류/발표/현장) 등에 이의가 있는 때

○ 이의신청 방법(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)

- (신청기한)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* 이내

* 5일 :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

- (제출서류) 선정결과 통보공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과 함께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산업기술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

- (작성방법) 신청기업(기관)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, 통보일, 평가결과,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

- (유의사항)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,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

12. 문의처

소속	담당자명	전화번호	이메일
한국화학연구원 화학산업기술지원센터	신기영 선임연구원	052-241-6384	sky77@kRICT.re.kr

2026년 05월 13일

한국화학연구원장